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66호

「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·단속 업무 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186호, 2019. 4. 30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·단속 업무 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·마약 섭취·사용여부 측정·단속 업무 관련 기준을 최신·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측정장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(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포함)하고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사용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
- 나. 단속 장소에 공항 외 비행장, 이착륙장 등을 포함하여 규정
- 다.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주기 준수를 위해 음주 측정장비의 교정 주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제작사 등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
- 라. 단속공무원의 최초 업무 수행 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,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
- 마.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 시 의료인의 서명란 추가 등 서식 변경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자격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의 견 |
|-------|-------|-----|
| | | |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팀
- 전화 : 044-201-4257 / 팩스 : 044-201-5627